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2015. 8. .

특 허 청
(정보고객정책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(제정)이유

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에 따라 특허 등 무상개방시 수수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4~6년차 특허료·등록료 20% 추가감면 종료일을 2년 연장하며, PCT-EASY 출원방식 폐지에 따른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허 무상개방(무상 통상·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 양도)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근거 마련(안 제7조)
- 나.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4~6년차 특허료·등록료 20% 추가감면 종료일을 종전 '16. 2. 29.에서 '18. 2. 28.로 2년간 연장(안 제7조)
- 다. PCT-EASY 출원방식 폐지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감면 폐지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2016년 2월 29일”을 “2018년 2월 28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특허청장은 특허권자,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,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거나,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허락한 자 또는 양도한 자에게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(이하 ‘지식재산포인트’라 한다)를 적립하여 줄 수 있다.

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포인트 적립요건, 적립액, 사용방법, 부정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환수 및 기타 지식재산포인트의 적립·사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 (생략) | 제7조(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「발명진흥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,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<u>2016년 2월 29일까지</u> 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·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|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18년 2월 28</u> <u>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|
| ④ ~ ⑧ (생략) |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⑨ <u>특허청장은 특허권자,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,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거나,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허락한 자 또는 양</u> |

<신 설>

제10조(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) ①·② (생략)

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.

1.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「특허협력조약 규칙」 제96조 수수료표 item3 (a)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도한 자에게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(이하 ‘지식재산포인트’라 한다)를 적립하여 줄 수 있다.

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포인트 적립요건, 적립액, 사용방법, 부정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의 환수 및 기타 지식재산포인트의 적립·사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<삭 제>

2. (생략)

④ ~ ⑧ (생략)

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